

#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25-000124호

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내지 6에 따라 2025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11일  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

## 2025년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 수정공고

「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」은 국내 기업,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·첨단물류시설 등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지정함으로써, 개발된 신기술 등의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

### 1. 신청자격

-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(기업, 정부출연(연), 대학 등)

### 2. 신청 대상 기술

#### 가.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(신규)

-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·개량된 기술
- 신규성·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
-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

#### 나.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

- 지정기간이 끝나기 150일 이내로 활용실적 및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물류신기술

### 3. 평가분야

#### ○ 우수 물류신기술등 평가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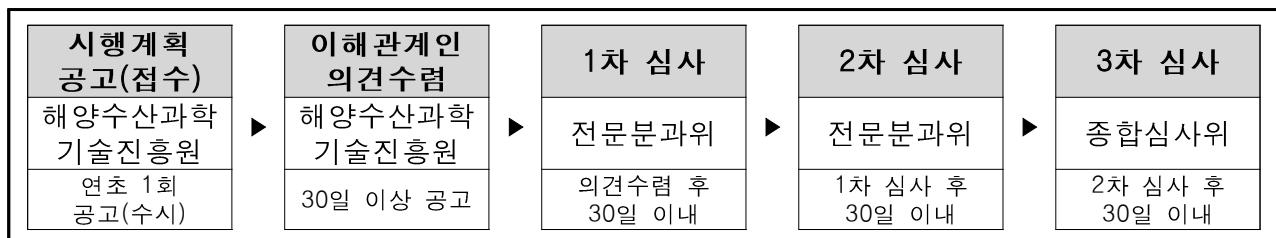
대분류	중분류(전문위 구성기준)
1. 항만물류시스템 운용기술	1-1. 항만물류 관리시스템기술
	1-2. 항만물류 운영시스템기술
	1-3. 항만물류 보안시스템기술
	1-4.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운항만물류 시스템운용 기술
2. 항만물류 운송기술	2-1. 하역 및 적재장비 개발기술
	2-2. 이송 및 운송장비 개발기술
	2-3.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물류운송기술

### 4. 추진절차

#### 가.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(신규)

-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·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「우수 물류 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(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-142호)」 을 적용함
  - (시행계획 공고)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,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보완
  - (이해관계인 의견수렴)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
  - (1차 심사) 신규성, 기술성, 경제성 등 평가
  - (2차 심사) 해당 기술 적용 현장에서의 성능·효과 확인 검증
  - (3차 심사)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예정기술 판정
  - (신기술 지정)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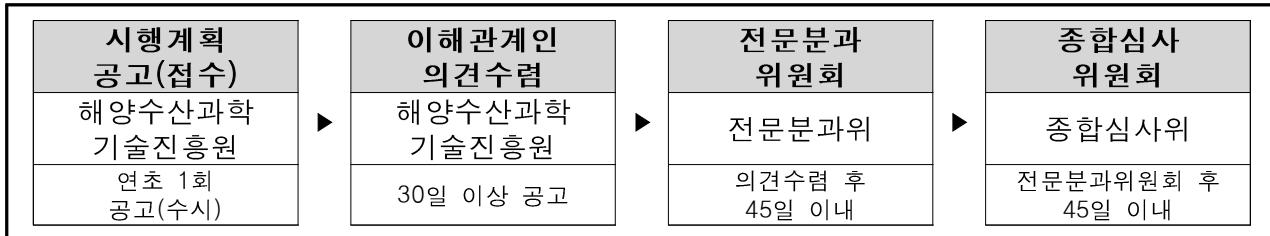
#### 【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추진절차 및 일정】



## 나.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

-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후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 심사

### 【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추진절차 및 일정】



## 5. 평가기준

### 가.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·평가 세부기준

\* 「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(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-142호)」 별표2

- (1차 심사) 신청·접수 완료된 기술에 대해 신규성, 기술성, 경제성에 대한 심사

구분	지정 심사기준
1차 심사	<p><b>A. 신규성 평가(40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차별성: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공정 및 원리 등의 독창성</li> <li>신규·진보성: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또는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및 성능 등을 개선·개량한 정도가 현저한 기술</li> <li>자립성: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</li> </ol> <p><b>B. 기술성 평가(40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물류운영절차: 기존기술 대비 절차 간소화, 복잡도 감소, 사용·시공·제작의 편리성 개선 정도</li> <li>품질·성능향상: 제시한 목표 및 기준 달성을 정량적·객관적인 데이터, 증명자료 등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도</li> <li>첨단성: 친환경 기술, 10대 유망기술, 국가유망 주력기술 및 세계 유망기술 여부</li> <li>안전성: 기술공학적 안전성과 이용자 안전성</li> </ol> <p><b>C. 경제성 평가(20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작·시공비 절감: 기존기술 대비 제작, 설계 및 시공 등에 소요되는 직·간접적인 비용 (자재, 인력, 장비 투입 등) 절감 정도</li> <li>파급성: 타기술과의 융합·호환 가능성 및 물류산업, 사회 및 국가 등의 전반적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</li> </ol>

- (2차 심사) 1차 심사 통과 기술에 대해 현장적용성 등을 심사

구분	지정 심사기준
2차 심사	<p><b>A. 현장적용성 평가(100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적용성: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, 제작·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 정도</li> <li>안정성: 균질한 품질 및 성능 등의 재현가능성</li> <li>유지관리: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, 불편 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도 및 생애 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직·간접적인 비용(자재, 인력, 장비 투입 등) 절감 정도</li> <li>안전성: 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 정도</li> </ol>

- (3차 심사) 2차 심사를 통과한 기술에 대해 심사과정의 적절성, 지정기준과의 적합성, 지정의 필요성 등을 심사

구분	지정 심사기준
3차 심사	1차 및 2차 심사 과정의 적절성 심사·평가 결과와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기준과의 적합성 지정의 필요성(지원 및 파급효과)

#### 나.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심사·평가 세부기준

\* 「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(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-142호)」 별표3

구분	평가항목(100)	평가기준
전문분과 위원회	신기술 활용실적(15)	지정신기술 활용건수 /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
	기술수준(15)	국내외 동종 유사기술 대비 신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
	후속개발노력(15)	신기술 지정 후 기술 개량·개선 정도에 따라 배점
	시장성(15)	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
	안전성(15)	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대책수립 정도에 따라 배점
	기술보급 노력(25)	신기술 지정 후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실적에 따라 배점
종합심사 위원회	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·평가 결과와 해양수산신기술 지정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연장의 필요성(지원 및 파급효과)	

### 6. 공고 및 접수

#### 가.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(신규)

- (공고·접수기간) 2025. 8. 11.(월) ~ 2025. 12. 31.(수), 수시접수
- (접수방법)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
<http://tech.kimst.re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물류신기술지정 신청접수(물류신기술지정→신청접수→**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(신규)**) →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→ 신청하기 클릭(접수완료)

○ (신규 지정심사 제출서류)

No	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①	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(필수)	전산접수	별첨
②	기술설명서(필수) * 신청서의 붙임서류 1~4에 해당	전산접수	별첨
③	기술설명서 요약본(필수)	전산접수	별첨
④	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인증·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(필수) * 신청서의 붙임서류 5에 해당	전산접수	-
⑤	법인등기부등본(법인기업의 경우) 또는 사업자등록증	전산접수	-
⑥	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(해당 시)	전산접수	-
⑦	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(해당 시)	전산접수	-
⑧	「산업표준화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인증서(해당 시)	전산접수	-

나.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

- (공고·접수기간) 2025. 8. 11.(월) ~ 2025. 12. 31.(수), 수시접수
- (접수방법)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 

<http://tech.kimst.re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물류신기술 지정기간 연장(물류  
 신기술지정→신청접수→**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**) → 내용입력 및 제출  
 서류 등록 → 신청하기 클릭(접수완료)
- (지정기간 연장심사 제출서류)

No	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①	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(필수)	전산접수	별첨
②	기술설명서(필수) * 신청서의 붙임서류 1에 해당	전산접수	별첨
③	기술설명서 요약본(필수)	전산접수	별첨
④	신청서의 붙임서류 2~4 각각 1부(필수)	전산접수	-

## 7. 심사 수수료

### 가.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(신규)

-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세\*(수입인지금액 1만원)를 납부  
 \* 수입인지세 납부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사전 문의
- 심사비용\*은 각 심사 단계 전 신청인이 진흥원에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된 가상계좌에 납부  
 \* 1차 및 2차 심사비용 각각 100만원

## 나.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

-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세\*(수입인지금액 1만원)를 납부
  - \* 수입인지세 납부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사전 문의
- 심사비용\*은 각 심사 단계 전 신청인이 진흥원에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된 가상계좌에 납부
  - \*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각각 100만원

## 8. 지정 혜택(※건설공사의 공법이 아닌 물품만 해당)

- 「판로지원법」 제13조(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)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**공공기관 의무구매** 제품에 해당(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% 이상)
-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른 **수의계약** 가능
-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른 **수의계약** 가능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**우수조달 물품\*** 지정 신청 기준에 해당
  - \*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,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, 구매책임자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
- 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\* 업무처리규정」 [별표 2]의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기술능력 부문(25점 배점) 중 기술수준 **최고배점(15점)** 부여
  - \* 모든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계약

## 9. 문의처

-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(인증평가팀)
  - 박승호 책임연구원, 02)3460-0394, spark8051@kimst.re.kr
  - 박선영 팀장, 02)3460-0391, sypark@kimst.re.kr
- \*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(공지사항) 및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(tech.kimst.re.kr) 등을 참조

【별첨1】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제출서류(신규)

【별첨2】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제출서류(연장)